

2015년도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 공고

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'기술혁신형 IP통합 솔루션 지원사업'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3월 24일
중 소 기 업 청 장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IP 분쟁 대응력 강화 및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지식재산 관점의 통합 지원
 - 기업의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R&D·인프라·활용 전반에 걸쳐 기업이 필요한 내용 중심 지원의 선택적 맞춤형 IP통합솔루션 제공
-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지식재산이 기업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수출형 지식재산 전략 추진

□ 사업 규모 : 23억원

□ 지원 대상

-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 원 이상¹⁾이고,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&D 투자 비율이 평균 2%이상인 중소·중견기업²⁾

1) 시스템 SW개발공급업 등은 50억원 이상

2)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선정 우대

2. 지원 금액 및 조건

□ 출연금 지원 기준

-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60~75%이내(중소·중견기업 구분)
- 기업부담금* :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%이상, 중견기업은 40%이상
* 기업부담금의 2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(단위 : 원)

과제 구분	R&D특허전략		특허경영전략	
	정부출연금	120백만원 이내		25백만원 이내
기업부담금	중견기업 (40%)	중소기업 (25%)	중견기업 (40%)	중소기업 (25%)

* 기업이 부담한 현금 부담금 일부를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해 지원

□ 지원조건 :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전담 인력 지정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'15.3.24(화) ~ '15.4.24(금), 18:00까지

*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
○ 접수안내 및 양식교부

- 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, 기업마당(www.bizinfo.go.kr),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tech.go.kr), 한국지식재산전략원(www.kipsi.re.kr) 홈페이지 공고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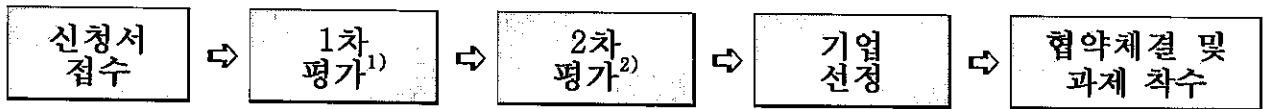
○ 접수처 : ahns@kipsi.re.kr(접수 확인 02-3287-4264)

- * 필요서류(각종 증빙자료 등)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해 제출
- * 마감일 18:00까지 신청서(IP성장전략서)를 제출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4. 지원 체계 및 내용

□ 지원사업 체계



- 1) 접수된 기업의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등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진행
- 2) 선정평가위원회의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

□ 평가 항목

1. 글로벌 기술 경쟁력
1) 확보 기술의 독창성 및 우수성
2) R&D 인프라 수준(인력, 시설 등)
3)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확보 전략의 적절성
4) R&D 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의지(인력 확보 및 교육 등)
5) 연구개발 투자 의지(최근 3년간 R&D 투자율 및 향후 투자율 등)
2. 지식재산 역량
1) 지식재산 역량 수준(지식재산권, 인력, 인프라 확보 수준 등)
2) 지식재산 자원 및 역량 확보의 적극성(인력, 인프라 확충 등)
3. 과제 추진 역량
1) 기업 차원(CEO 및 CTO)의 과제 수행 의지
2) 기술개발 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
3) 지식재산 기반의 R&D 성장 잠재력(정량·정성 및 경제적 기대 효과 등)

□ 지원 내용

- 기업 단위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, 조직, 인력 등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 진단 및 고부가가치 핵심·원천 특허 확보 지향형 R&D 투자전략 수립 지원

구분	주요지원 내용
①R&D특허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주력기술 IP 획득·보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P 관점에서 R&D 전략 정교화 - 경쟁사 특허 분석을 통한 선제적 특허분쟁 예방 - 시장·기술 분석 내용을 반영한 IP 전략 수립 ● IP 기반 신사업 R&D 기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P 기반의 맞춤형 미래 신수종 R&D 전략 수립 - 원천·핵심 특허 설계 ● ②특허경영전략
②특허경영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IP인프라 구축) IP 전담인력 양성 및 연구자 교육, IP 관리 시스템 구축, IP제도·규정 정비 ● (IP건강진단) IP 역량진단 ● (특허질적평가) 기업 보유 특허에 대한 무형자산 평가 등

□ 지원 방식

-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(Patent Director)와 분석 전문기관 (특허·시장·기술)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·밀착형 IP 전략 통합 지원

□ 우대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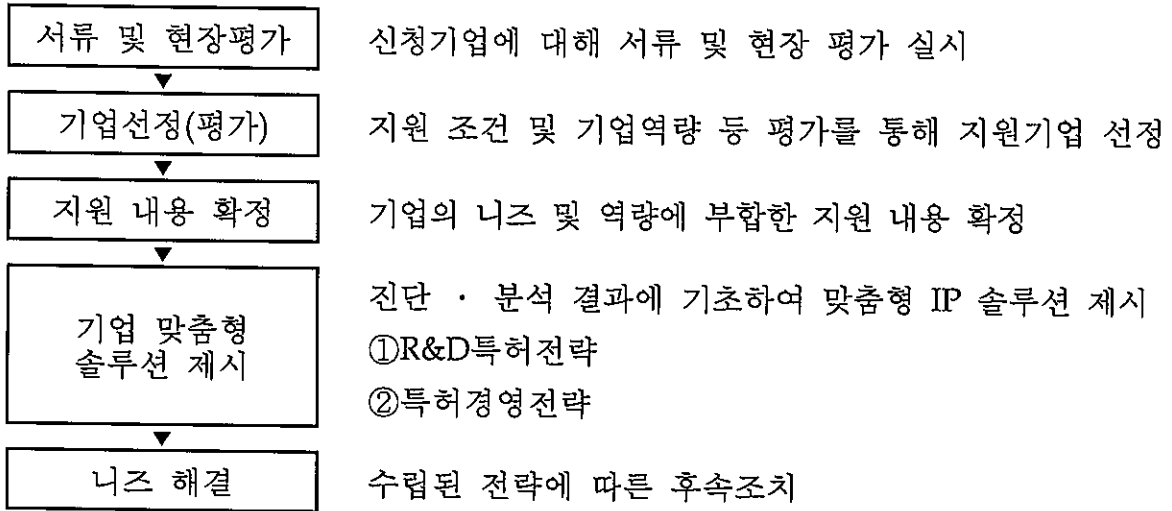
- 히든챔피언 후보기업, 비수도권 소재기업 등 우대가점 부여

구분	기준	점수
히든챔피언 후보기업	World Class 300 기업, 글로벌 강소기업, 글로벌 전문기업, 지역형 강소기업	5
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내일채움공제	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성과보상기금(내일채움공제) 가입기업 * 매출액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5점 부여 (예시) 매출 1,000억, 5명 가입 → 2.5점 부여	5
비수도권 소재 기업	서울·인천·경기를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	3

* 우대가점은 기업당 최대 10점

□ 지원 절차

- 서류 및 현장평가, 지원기업 확정, 맞춤형 IP 솔루션 제시



5. 지원 제외 사항

-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자(신청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신청기업, 대표자 등)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

- ① 기업의 부도, 휴 · 폐업
- ②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,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)
- ③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경우
-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- ⑤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)

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-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-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)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
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6. 기타 공지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 (주관기관, 협력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'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 운영지침'에 따른다.

7. 문의처

- 상담 및 문의처

구분	담당부서	연락처
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	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월드클래스 IP 센터	02-3287-4331, 4264

작성요령

- 기업구분
 - 중소기업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중견기업: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
- 본사 주소: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입력
- 기업실사 희망 장소: 서면 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형 IP 성장전략서 확인 및 IP 현황 진단을 위하여 특허전문위원이 방문하는 장소
- 업종: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9차개정)상의 분류코드 6자리
 - 주업종의 기준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표시(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)
(예시: C24121,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)
- 산업기술분류: 소분류 6자리 코드번호 기재
 - 산업기술분류표에 의한 분류번호 기재(과제 심사 및 수행 시 참고)
- R&D투자액: 당해년도에 투입된 자산상의 개발비와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
- R&D투자비율
 - 최근 3년('12~'14년)간 R&D투자비율의 평균 값
: ('12년 R&D투자비율+'13년 R&D투자비율+'14년 R&D투자비율)×(1/3)
- 상시 근로자수: 상시 근로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
 1. 임원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
 2.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 3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
 4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(이하 "단시간근로자"라 한다)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

*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)를 통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
-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
 - 총괄책임자는 기업 대표급 임원으로 IP, 시장, 기술 등 전반에 걸친 IP 성장 전략을 총괄 지휘할 수 있어야 함(예시: CTO, 연구개발 전담부서장, 연구소장, 특허센터장 등)
 - 실무담당자는 기업이 IP 전담인력으로 지정하여 본 사업의 IP 성장 전략 수행 실무를 담당하여야 함

□ 기업 현황

1. 매출액 및 연구개발 투자액

(단위: 억 원)

연 도	2012년	2013년	2014년
매출액(A)			
연구개발 투자액(B)			
연구개발 투자비율(B/A)			

2. 매출 구성

(단위: 억 원)

연 도		2012년	2013년	2014년
내 수				
수출	직수출			
	기 타			
매출액 대비 직수출 비중(직수출/매출액)				

3. 주력제품 매출 비중 및 시장 점유율(최근연도)

구 분	국 내		해 외		
	매출비중*	점유율	국가명	매출비중	점유율
○○○제품	%	%		%	%
○○○제품	%	%		%	%
○○○제품	%	%		%	%

* 매출액 대비 해당 제품의 매출비중(최대 3개까지 기재)

4. 연구개발 전담부서(연구소) 및 전담인력

구 분	있음	없음	전담인력 수(명)
연구개발 전담부서(연구소)			
연구개발 전담인력			

5. 지식재산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현황

구 분	있음	없음	전담인력 수(명)
지식재산 전담부서			
지식재산 전담인력*			

* 기업 내에서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등의 IP 전략 기획,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유지 관리, 지식재산권 동향 조사, 특허 침해 관련 대응 및 소송 업무 등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

6. 특허 보유 현황

(단위: 건)

구분		~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계
국내 출원특허								
국내 등록특허								
해외 출원특허	미국							
	일본							
	유럽(EU)							
	기타							
	PCT							
해외 등록특허	미국							
	일본							
	유럽(EU)							
	기타							

작성요령

- 과제 개요는 개조식, 글자크기는 11폰트, 글씨체는 휴먼명조로 작성
- 기술혁신형 IP 성장 전략서 본문은 3~4 page 내외로 작성하되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
- 연구개발 투자액, 수출액 등 기술혁신형 IP 성장 전략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평가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①R&D특허전략 지원과제는 [붙임1]의 내용을 작성하고, ②특허경영전략 지원 과제는 [붙임2]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
- 참여인력 작성시 'R&D 연구원'은 전략 수립시 10개월간 실제 과제에 참여하여 특허전략을 도출하거나 IP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연구원으로 최대 5명까지 작성 가능

[붙임1] 'R&D특허전략' 지원 과제

1. 과제 개요

(1) 대상 기술(제품) 내용
(2) 대상 기술(제품)의 특허 분석 및 전략 필요성
(3) 과제 완료 후 기대 효과
(예시) - 매출 증대 효과 - 경제적 파급 효과 - 일자리 창출 효과 등
(4) 특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
(예시) - 특허 정보 검색 방법, 특허법 이해 등 지식재산 전담인력 밀착 교육 등 - 사내 지식재산 제도 및 규정 정비 등 - IP 관리 시스템 구축 등

2. 과제 참여인력 현황

	성명	소속부서	직위	전공 및 학위			주요 업무
				취득연도	전공	최종학위	
총괄책임자							
실무책임자							
R&D 연구원							

[붙임2] '특허경영전략' 지원 과제

1. 과제 개요('특허경영전략' 프로그램 지원시 작성)

(1) 특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
<p>(예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허 정보 검색 방법, 특허법 이해 등 지식재산 전담인력 밀착 교육 등 - 사내 지식재산 제도 및 규정 정비 등 - IP 관리 시스템 구축 등
(2) 과제 완료 후 기대 효과
<p>(예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P 인식 제고 - 직무발명제도 정착으로 양질의 아이디어 도출 증가 등

2. 과제 참여인력 현황

	성명	소속부서	직위	전공 및 학위			주요 업무
				취득연도	전공	최종학위	
총괄책임자							
실무책임자							
R&D 연구원							